

『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0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1월 05일

제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- 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이용자에 쾌적한 환경 조성,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활성화 및 공공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위탁재산현황

- 시 설 명 : 구포동 생활체육공원
- 위 치 : 구미시 구포동 1191번지
- 규 모 : 부지 28,052㎡, 건축면적 178.83㎡
건축연면적 224.36㎡(지상2층)
- 사 업 비 : 3,000백만원(국비 900, 도비 630, 시비1,470)
- 주요시설 : 클레이코트 6면, 축구장, 풋살장, 농구장, 관리동 등

○ 운영전출금 : 연 263백만원

▪ 운영전출금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 건 비	공공요금	일반운영비	시설유지비	기타	비 고
263	206	24	13	17	3	

라. 참고사항

○ 「체육시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
○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엽

○ 본 동의안은

- 「체육시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,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를 위한 동의안임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위탁재산 명칭, 위치, 규모, 사업비, 주요시설 등 위탁재산 현황과 위탁 시 발생하는 운영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의 사무위임 규정과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거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동의안으로 시 직영 시 장단점과 민간위탁 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- 아울러 민간위탁 목적이 관리의 효율성과 체육공원의 운영 특성상 전문성 확보인 만큼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

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육서비스 및 지역 스포츠 사업 추진을
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내실 있는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야
할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